경영유의사항 · 개선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케이티비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16.6.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해외 현지법인 관리 철저

□ 미국 및 태국 현지법인 경영과 관련하여 장·단기 수익구조 개선방안 수립, 신규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 실시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자금집행의 적정성 점검, 정기적인 내부 감사 등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구축하고

현지법인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통해 케이티비투자증권㈜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인수 및 투자업무 관련 리스크 관리 철저

□ 케이티비투자증권㈜은 인수 및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4.2.7. 리스크관리소위원회에서 1개월 이내 매출 조건으로 A사 무보증사채 150억원 인수를 승인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25억원을 매각하지 못하고 있고,

자회사(지분율 : 100%)인 케이티비프라이빗에쿼티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참여중인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B사 지분을 2,832억원(인수금융 1,650억원)에 취득한 투자도 검사종료일 현재 실적 부진 등으로 B사 투자 가액을 감액처리하고 보유 지분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등으로 투자손실 가능성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바

증권의 인수시 매출 가능성 등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미매각 사례를 최소화하고, 지분투자시 출자제안서의 이행 및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인수 및 투자 업무관련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적합성 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 영업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할 경우 이를 방지할 전산시스템이 미비한 바

부적합한 투자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보완 등 투자권유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채권거래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 위험관리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증거금을 면제할 수 없도록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채권영업팀은 위험관리 담당 임원 등의 승인 없이 위탁증거금을 면제하거나 채권의 공매도를 허용한 사례가 있었는 바, 채권거래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리스크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리스크관리 업무 내실화 필요

□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리스크규정」상의 담당업무인 '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고 부동산PF 대출 한도도 내부 상·하위 규정간 내용이 상이하여 리스크관리 업무 처리에 있어 실무부서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향후에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내부 규정을 정비하여 리스크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 개선 필요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은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매매를 하되, 소속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타사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케이티비투자증권㈜은 2009.1.8. ~ 2014.9.22. 기간 중 임직원 14명이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계좌 개설 사실 또는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 이중 소속 임직원 5명은 보유한 타사계좌를 신고하였음에도 동 계좌들의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임직원 5명이 신고한 타사계좌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 및 지도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 아울러, 소속 임직원이 자체 내규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지침」에 반하는 부적절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미흡한 바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63조 제2항 및 제3항